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50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7차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2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전문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교통SOC 사업의 효율적 투자결정을 위해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7차 개정지침을 마련하였음.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7차) 주요내용

○ 노면철도(트램) 부문 신설

- 노면철도(트램)를 도로, 철도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사업특성을 반영한 수요예측, 비용·편익 산정방법 제시

○ 편익 항목 개선

- (편익 구조) 사업유형별 적정 편익산정을 위해 기존의 직접·간접 편익을 공통·사업특수(특정유형에 한정 반영) 편익으로 개편
- (신규 편익) 도로 입체화시 유희부지 활용 등 사업유형별 편익 추가* 반영

* [도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유희부지 활용, 지역산업 활성화, 교통혼잡 부(-)편익
[철도] 유희부지 활용, 통행시간 신뢰성향상(용량증대), 교통혼잡·도로축소 부(-)편익

○ 기초자료 현행화 및 타당성분석 개선

- (기초자료 현행화) 국가교통 DB 및 통계자료 갱신, 최근 실적단가 반영 등
- (사회적 할인율) 기존 5.5%에서 4.5%로 변경
- (철도화물 수요예측)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철도역간 이동(O/D) 자료를 실제 기·종점인 생산지와 소비지간 이동으로 수정·분석하는 방법 추가

2. 기타 참고사항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7차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787,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